2000년대 자산관리 전략: 실무적 시사점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10년이 남긴 것

2000년대의 자산관리 전략은 오늘날의 실무를 형성하는 법적·제도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은행법(Banking Act) section 47은 그 후 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객 정보의 비밀유지를 규율합니다.[1] 수탁자법(Trustees Act)에는 2004년의 유류분 보호 조항과 유보권한 조항이 여전히 들어 있습니다. 전문 수탁자는 계속해서 신탁회사법(Trust Companies Act)의 적용을 받습니다. 프라이빗 신탁회사, 가족소유 투자지주회사, 외국 프라이빗 뱅크의 부킹 센터는 모두 현재의 형태가 이 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10년은 또한 지금과는 다른 기대 아래 형성된 고객 관계를 남겼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개설된 계좌는 싱가포르에서 외국 탈세가 자금세탁의 전제범죄가 아니었고 자동정보교환도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개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중 다수는 나중에 정상화되거나 종료되었으며, 그 과정은 제E편 제II장에서 설명합니다. 과거의 구조를 검토하는 자문가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래된 관계의 서류는 흔히 그 당시의 기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2000년대 구조를 검토하는 자문가를 위한 점검 목록

- 싱가포르 신탁의 준거법과 설정일을 확인하십시오. 2004년 12월 15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신탁에는 100년의 고정 영구구속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위탁자가 권한을 유보했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수탁자법 section 90(5)가 보호하는 투자 및 자산관리 기능의 범위 안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가문이 외국의 유류분 청구에 대항하여 section 90(2)에 의존하는 경우, 싱가포르법, 주소지법이나 국적법, 또는 이전의 준거법에 따른 위탁자의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 프라이빗 신탁회사가 이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신탁회사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면제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검증하십시오.
- 은행에 의한 공개에 관해 자문할 때에는 *Susilawati v American Express Bank Ltd* 판결에 따라 은행법 제3부칙의 관문을 망라적인 것으로 취급하십시오.
- 위탁자와 수익자의 모든 거주국에서 기존 자산의 세무상 지위를 검토하십시오. 싱가포르의 비밀유지는 더 이상 신고되지 않은 자산을 정보교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 10년 동안 싱가포르로 이전된 자산에 대해 재산 형성 경위를 문서화하십시오. 은행들은 이제 오래된 관계에도 현행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주

1. section 47의 표제는 2016년 개정으로 “Banking secrecy”에서 “Privacy of customer information”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짐.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